

# 감 사 규 정



## 한국항공대학교

##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2013.12.23.		16		
2	2016.5.27		17		
3	2019.12.27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 감사 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사무분장규정 제4장 제6조의2에 의하여 실시되는 감사의 직무수행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감사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업무수행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기관) 본 대학교의 감사업무는 기획처에서 관장하며, 기획처장이 통할한다. 다만, 총장은 필요에 따라 감사업무를 달리 위임할 수 있다.

**제3조** (적용범위) 감사에 관하여는 따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감사대상 및 주기) 본 대학교의 모든 부서(기관) 및 산학협력단은 본 규정에 의한 감사의 대상이 되며, 부서(기관)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12.23.>

**제5조** (감사의 범위) 감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대학교의 각 규정에 따른 업무의 처리상황
2. 회계업무
3. 제도 및 행정운영상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
4. 기타 총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6조** (감사의 종류) ①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 ②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 ③ 특별감사는 총장의 특별지시가 있는 경우와 기타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행하며, 특정 행정운영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때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특별히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 제 2 장 감사계획의 수립

**제7조** (감사계획의 수립) 기획처장은 감사실시 1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실시 기간 및 일정
3. 감사대상 부서
4. 감사자의 직위 및 성명

5. 감사내용
6. 기타 감사관련 사항

**제8조** (중복감사의 지양) 교내·외 타 기관으로부터 기 감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계획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 시행한 감사 결과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제 3 장 감사준비 및 실시

**제9조** (감사실시계획의 통보) 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수감 부서에 감사계획 및 일정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감사의 경우에는 수감 부서에 사전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

- ② 기획처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항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사항을 감사실시 3일전까지 수감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10조** (수감자료의 제출) ① 교내 전 부서(기관)의 장은 감사반에서 요청하는 수감자료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수감자료라 함은 감사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제11조** (정보수집 및 자료분석)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대상 선정의 적정성,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점의 확인 등을 위하여 감사대상에 관련된 정보수집 및 자료를 분석한다.

**제12조** (감사실시) ① 감사실시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 ② 실지감사는 감사반이 수감 부서 및 현장에서 실시한다.
- ③ 서면감사는 감사반이 수감 부서에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3조** (감사반의 편성) ① 감사반은 기획처장을 감사반장으로 하여 예산평가팀장을 비롯한 12명 이내의 인원으로 편성하며, 기획처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개정 2016.5.27., 2019.12.27>

- ② 감사반장은 감사 실시에 있어 해당업무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에서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감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 ③ 감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3.12.23.>

### 제 4 장 감사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제14조** (감사결과 보고) 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15일 이내에 감사결과 보고를 서면으로 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9.12.27>

- ② 전 항의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감사실시기간 및 일정, 감사 대상 부서, 감사인의 직위 및 성명, 감사에 관한 종합의견, 시정조치사항, 개선 및 건의 사항, 기타 감사관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 (시정요구 통보) 감사반장은 총장의 지시에 따라 감사결과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감 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시정조치 보고) ① 수감 부서의 장은 전조의 시정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② 다만, 진행 중인 사항 또는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가 장기간을 요하는 사항인 때에는 지연사유 및 계획을 제출하고 조치가 완료된 때에 그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17조** (이의신청 및 조치) ① 수감 부서의 장은 제15조의 시정요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이의 내용을 명백히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사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전항의 이의신청을 받았을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 (시정조치 확인) 감사반장은 전조의 시정조치 결과에 대하여 차기 감사 시에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한다.

## 제 5 장 감사인의 자격 및 권한

**제19조** (감사의 독립 원칙) 감사인은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집행부서 또는 타부서 및 상급자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한 태도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20조** (감사인의 자격) ① 감사업무를 수행 할 감사인을 위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1. 주요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많고 업무처리 능력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2.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인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교원징계위원회운영규정」 제3조 및 「일반직원징계위원회운영규정」 제3조의 정직, 감봉,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개정 2016.5.27>
2. 근무태도 및 평가 성적이 매우 불량한 자
3. 총장 또는 감사반장이 부적격자로 인정한 자

**제21조** (감사인의 권한) 감사인은 원활한 감사직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회계관련 제 장부, 증빙서류,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2. 관계자의 면담 및 출석, 답변의 요구
3. 업무개선을 위한 제안 및 건의
4. 기타 감사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의 요구

**제22조** (감사인의 준수사항)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감사인은 관계규정 등을 근거로 하여 사실과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감사인은 직무상 취득한 행정상의 기밀 또는 개인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남용할 수 없다.
3. 감사인은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수감 부서의 수감인이 업무상의 창의와 활동 기능이 위축되거나 침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감사는 수감 부서의 평상근무 상태 하에서 실시하고 일상 근무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3조** (감사인의 대우) 감사인에게는 소정의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제 6 장 보 칙

**제24조** (긴급보고) 감사반장은 감사 진행 중 중대한 위법, 부당 사항을 발견하여 이의 처리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외부기관 수감보고) 본 대학교 각 소속 부서(기관)장은 외부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때에는 감사기관, 감사자의 직급, 성명, 감사기관, 감사사항 및 결과보고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26조** (타 규정과의 관계) 타 규정 중에서 감사에 관련되는 사항이 본 규정과 상치될 경우에는 본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